



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되는

2020년 소방점검법령의 개정

- ✓ 점검후 보고서 제출기한 7일로 변경
- ✓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

1.소방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(제19조)

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었던 기한이 7일로 변경 됩니다.

2.소방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(제18조 별표)

기존

-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m² 이상.
(아파트 5,000m² 이상, 11층 이상)

개정후

-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-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m² 이상.



|주| 제일소방방재
FIRE PROTECTION



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되는
개정법령 관련

경과규정

소방시설법 제19조 및 별표1

*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8월

- ✓ 2020년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.
- ✓ 2021년 이후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. 이후 6개월 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.

*사용승인일이 9월에서 12월

- ✓ 2020년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.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.
- 사용승인일 전 작동기능점검을 미리 실시하더라도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
- ✓ 2021년 이후 : 상동

전화문의 : (주)제일소방방재 T.1644-3560



|주|제일소방방재
FIRE PROTECTION